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효력발생일** : 2015년 7월 1일

□ **정정 사유** : (1)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

□ **정정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서식개정에 의한 정정	<u>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15. 5. 31 기준</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u>환매조건부 매수</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u>2015.4.29</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u>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u>

	<p>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 소득 제외)</p> <p>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p>	<p>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 소득 제외)</p> <p>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p> <p>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p> <p>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p>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15.4.2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15.4.2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15.4.29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법 개정사항 반영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p>(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p>		<p>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